##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18

발의연월일: 2021. 1. 15.

발 의 자 : 김예지 · 김용판 · 이종배

김희국 · 홍석준 · 김선교

배현진 • 이명수 • 이종성

추경호 · 최형두 · 최승재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,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민간인증서에 음성접근서비스 등 보안 키패드의 대체수단이 없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전 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 준에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 가함으로써 장애인·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	제7조(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
준 등) ① (생 략)	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	2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	
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(이	
하 "운영기준"이라 한다)을 정	
하여 고시한다. 이 경우 운영기	
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	
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	
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6. 장애인・고령자 등의 전자서
	명 이용 보장
<u>6</u> . (생 략)	<u>7</u> . (현행 제6호와 같음)